

# 「평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 보고서

###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월 6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5년 1월 10일 회부
- 상정일자: 제30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5년 1월 16일 상정 ·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안전교통과장)

#### 가. 제안이유

-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 [붙임 1]

###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 5. 토론 요지: 「없음」

### 6. 심사 결과: 「수정가결」

### 7. 수정안 요지

- 안 제3조제1항의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하는 경우’를 ‘비치해야 하고,’로 수정한다.

###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1부.

2. 평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1부.

3. 평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4. 평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1]

## 평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381호 관련
------------	------------

제안연월일 : 2025. 1. 16.  
제 안 자 : 조례특위위원장

### 1. 수정이유

- 본청 · 직속기관 · 사업소 및 읍 · 면 · 출장소 등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의무화하여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입법 목적을 신속히 달성하고자 함.

### 2. 수정내용

- 방연마스크의 비치 등(안 제3조제1항)

## **평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평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의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하는 경우’를 ‘비치해야 하 고,’로 수정한다.

[붙임 2]

## 수정안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p><b>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①</b></p> <p>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 · 사업소 및 읍·면·출장소에 방연마스크를 <u>비치할 수 있고,</u> <u>비치를 하는 경우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한다.</u></p> <p>② (생략)</p>	<p><b>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①-</b></p> <p>-----</p> <p>-----</p> <p>-----</p> <p>-----</p> <p>----- <u>비치해야 하고,</u></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 「평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제출
- 제안일자 : 2025. 1. 6.
- 회부일자 : 2025. 1. 10.
- 상정일자 : 2025. 1. 16.

### 2. 제안이유

-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4. 검토의견

### 가. 관련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 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나. 입법의 취지

-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평창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에서 방연마스크의 비치 장소 및 안내 표지 설치를 규정함.

- 안 제4조(재정지원)에서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5조(교육지원)에서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활용과 관련된 안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5.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평창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 취지가 인정되고, 자치사무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이 제정된 것으로 판단됨.

## 불임1 관계법령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이하 “화재예방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생략)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불임 참고 자료

### □ 강릉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2024.7.3.) 외 124건

(관내 5곳: 강릉시, 양양군, 횡성군, 동해시, 강원특별자치도)

# 평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81
----------	-----

제출년월일 : 2025. 1. 6.

제출자 : 평창군수

## 1. 제안이유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2025년 당초예산 도비 보조사업 반영(800천원)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4.11.19. ~2024.1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4-1638호, 안전교통과-50882(2024. 11. 19.)호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기획예산과-6703(2024. 10. 25.)호]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기획예산과-6703(2024. 10. 25.)호]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불수용, 반영결과 제출[가족복지과-14673(2024. 10. 30.)호], [안전교통과-50884(2024. 11. 19.)]

5) 법제심사 : 적정[기획예산과-9878(2024. 12. 17.)호]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예산과-10519(2024.12.27)호]

## 평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평창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둘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
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 직속기관 · 사업소 및 읍 · 면 · 출장소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하는 경우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평창군의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관내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군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7.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9.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4조(재정지원)**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지원)**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활용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홍보)** 군수는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하고, 실천·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방연마스크의 보급·비치 확대,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이하 “화재 예방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 · 아동 · 장애인 ·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 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 · 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 · 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 · 수산 · 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 관리

가.~더. (생략)

5. 교육 · 체육 · 문화 · 예술의 진흥

가.~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 · 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 · 경계 · 진압 · 조사 및 구조 · 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3조 제1항에 따른 기관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비용
- 안 제4조에 따라 안 제3조 제2항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고하고자 방연마스크 비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비용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 연평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안 제3조에 해당되는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 및 비용 지원시 연평균 예상되는 비용이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함.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도시안전국 안전교통과장 어 성 용
연락처	(033) 330 - 2019